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9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민형배·박상혁·김문수

박지혜 • 이훈기 • 이재강

이정문 · 남인순 · 유준병

박지원 • 문정복 • 김용민

김태년 • 유후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

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 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9조의3).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등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복사) ① ~ ③ (생 략)	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
	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은 판
	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등에 기재된 문자열 또
	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u>⑥</u> 제 <u>5항</u>
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	
한다.	
<u><신 설></u>	⑦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
	료를 무료로 한다.
<u>⑥</u> (생 략)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